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58
----------	-------

발의연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문진석 · 맹성규 · 이연희
이정문 · 이재관 · 강준현
이주희 · 복기왕 · 허영
박정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의 종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로 기업의 이전 결정과 실제 이전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제도가 안착되기 전에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 유인이 약화되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4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